호스피스 ·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1 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조 국 · 이재관

백승아 · 진선미 · 김남희

정춘생 · 용혜인 · 김 윤

김원이 · 장종태 · 이수진

정태호 • 민형배 • 박지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,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,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음.

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,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

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(안 제2조 등).

법률 제 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"을 "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제1조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"를 "말기환자의"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"를 "제16조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"를 "말기환자에게"로, "임종과정의"를 "죽음에 이르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"를 "말기환자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"를 "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말기환자 또는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(이하 "말기환자등"이라 한다)를"을 "말기환자를"로 하 며, 같은 조 제8호 중 "말기환자등의"를 "말기환자의"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"말기환자등과"를 "말기환자와"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"진료,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"를 "진료와 호스피스에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말기환자등에게"를 "말기환자에게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말기환자등은"을 "말기환자는"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"를 "말기환자와"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"를 "말기환자가" 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"를 "말기환자의" 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임종과정에 있는지"를 "말기환자인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임종과정에 있는지"를 "말기환자인지"로,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"을 "기록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이 경우 말기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·절차 및 결과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2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"를 "말기환자인지"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"말기환자등의"를 "말기환자의"로 하고, 같은 항제5호 중 "말기환자등과"를 "말기환자와"로 한다.

제38조 본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"를 "말기환자인지"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2호 중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"를 "말기환자에"로 한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임종과정	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연명의료
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	결정에 관한 법률
관한 법률	
제1조(목적) 이 법은 호스피스・	제1조(목적)
완화의료와 <u>임종과정에 있는</u>	<u></u> 말기환자의
<u>환자의</u>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	
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	
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	
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	
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임종과정"이란 회생의 가능	<u><삭 제></u>
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	
고 회복되지 아니하며, 급속	
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	
임박한 상태를 말한다.	
2. "임종과정에 있는 환자"란	<u><삭 제></u>
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	
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	
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	

판단을	바흐	지.르	마하다
컨턴글	밑근	イラ	뒫 안 너.

- 3. "말기환자(末期患者)"란 적 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 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<u>보건복</u> 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 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.
- 4. "연명의료"란 <u>임종과정에 있</u> 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 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<u>임종</u>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을 말한다.
- 5. "연명의료중단등결정"이란 <u>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</u>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 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.
- 6. "호스피스·완화의료"(이하 "호스피스"라 한다)란 다음

3
<u>체16</u>
조에
<u>.</u>
4말기환자에
게
5
말기환자에
6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<u>말기환자로 진단</u>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 "호스피스대상환자"라 한다)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의료를 말한다.

가. ~ 마. (생 략)

- 7. "담당의사"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로서 <u>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</u> "<u>말기환자등"이라 한다)를</u>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.
- 8. "연명의료계획서"란 <u>말기환</u>
 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
 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
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
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(전자문
 서를 포함한다)로 작성한 것
 을 말한다.

9. (생략)

제7조(종합계획의 시행·수립) ① 저 (생 략)

말기환자로 진
단을 받은 환자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7
<u></u> 말기환자를-
8 <u>말기</u>
<u>환자의</u>
<u>.</u>
9. (현행과 같음)
에7조(종합계획의 시행·수립) ①
(현행과 같음)

]
ļ.

- 4. <u>말기환자등과</u> 그 가족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및 지침의 개발·보급 5. ~ 8. (생 략)
- J. 0. (78 ¬)
- ③ ~ ⑤ (생략)
- 제8조(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 회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위원은 말기환자 <u>진료, 호스</u> <u>피스 및 임종과정에</u>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(생략)
- 제10조(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· 등록 등) ① 담당의사는 <u>말기</u> <u>환자등에게</u> 연명의료중단등결 정,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 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<u>말기환자등은</u> 의료기관
 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·한의원·병원
 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및 종합

②
5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8조(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
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진료와 호</u> 스피스에
환자에게
② <u>말기환자는</u>

병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 략)

제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 지 치 및 운영 등) ① (생 략)

-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-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<u>임종과정에 있</u> 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- 2. ~ 5. (생략)
- ③ ~ ⑦ (생 략)
- 제15조(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지의 대상) 담당의사는 <u>임종과정</u>의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.
 - 1.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 서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 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

	,
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	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
	치 및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	2
	<u>.</u>
	1
	<u> 본/ [년/] * [</u>
	2. ~ 5. (현행과 같음)
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세	15조(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
	의 대상) <u>말기환자</u>
	フト
	
	1

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, <u>임종과정에 있는 환</u> <u>자의</u>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

2. (생략)

제16조(환자가 <u>임종과정에 있는</u> <u>지</u> 여부에 대한 판단) ① 담당 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<u>임종과정에 있는</u> <u>지</u>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 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(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0조(기록의 보존)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

<u>말기환자의</u>
2. (현행과 같음) 제16조(환자가 <u>말기환자인지</u> 여 부에 대한 판단) ①
<u>말기환자인지</u>
<u>기록</u>
이 경우 말기환자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·절 차 및 결과 기록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삭 제>
제20조(기록의 보존)

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 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<u>임종</u>
 <u>과정에 있는 환자</u>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

3. ~ 7. (생략)

제21조(호스피스사업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.

-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 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
- 2. ~ 4. (생략)
- 5. <u>말기환자등과</u>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6. ~ 9. (생략)
- ② (생 략)

제38조(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)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, 제16조에 따른 <u>임</u> <u>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</u> 여부 에 대한 판단 및 제28조에 따

 .
1. (현행과 같음)
2 <u>말기</u>
환자인지
3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호스피스사업) ①
<u>.</u>
· 1. 말기환자의
1. <u>E/ U/ 1 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말기환자와
J. <u>크기친시각</u>
с о (청케코 기ウ)
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
부담)
말기환자인지

른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
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
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「국민
건강보험법」에서 정하는 바어
따른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
법」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
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른다.

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</u>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

② (생 략)

제4	40조(벌칙) ①
	1. (현행과 같음)
4	2. <u>말기환자에</u>

② (현행과 같음)